

부속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지침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6.2.29.		16		
2	2016.10.28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부속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지침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부속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소장(센터장)) 부속연구기관 소장(센터장)(이하, 소장이라 한다)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되,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

제3조 (연구원 관리) ① 부속연구기관 소속연구원 임명은 부속연구기관 소장이 연구협력처(이하 주관부서라 한다)로 요청하며 총장 승인 후 임명한다.

② 부속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이 변동되거나 신규 추가 될 경우 소장은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 (평가계획 및 수립) 부속연구기관 평가는 매년 시행하며,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라 평가 계획을 수립하며, 학술연구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.

- ① 평가 대상 부속연구기관
- ② 평가 일정
- ③ 평가 항목 및 평가점수
- ④ 평가 결과 발표
- ⑤ 평가 결과 활용
- ⑥ 기타 평가에 부수되는 사항

제5조(평가계획 통보) 주관부서에서는 평가계획을 평가대상 연구기관에 통보한다.

제6조(평가자료 제출) 부속연구기관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부속연구기관 실적평가서 [서식1]을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평가기준 및 심의) ① 학술연구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각 부속연구기관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심의한다.

② 부속연구기관의 2년 연속 평가 실적이 기준 이상인 경우 학술연구비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장 승인 후 자립운영 연구소는 대학부속 연구소로, 자립운영 유예연구소는 자립운영 연구소로 승격될 수 있다.

③ 부속연구기관의 2년 연속 평가 실적이 기준 미달일 경우 학술연구비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장 승인 후 대학부속 연구소는 자립운영 연구소로, 자립운영 연구소는 자립운영 유예연구소로 강등되며, 자립운영 유예연구소는 해산된다.

④ 최종평가점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도 교외연구비 수주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 후 재심이 고려될 수 있다.

⑤ 실적평가서를 미제출하는 연구기관은 기준미달로 판정된다.

⑥ 평가점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속연구기관 평가지침 [별첨1]을 따른다.

제8조(운영) ① 부속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부속연구기관 명의로 계약된 과제의 간접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항목은 [별첨3]을 따르며 기타 운영비의 신청·관리와

그에 따른 구매·지급·회계처리 등의 기준은 우리 대학 각종 규정을 따른다.

② 연구협력처에서 지원하는 부속연구기관 운영비는 대학부속 및 자립운영 연구기관에만 해당되며, 자립운영유예의 연구기관은 유예기간 중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삭제<2016.2.29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 단, 제 7조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된 지침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된 지침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되, 부속연구기관 평가지침[별첨 1]은 2016학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.

<별첨1> 개정 2016.10.28

부속연구기관 평가지침

1. 반영비율

유형	평가항목				계
	연구비 수주	연구성과	연구기관 활동	대학발전 기여	
A형	50	30	10	10	100
B형	30	40	20	10	100
C형	10	50	30	10	100

※ C형은 인문사회계열 부속연구기관만 선택 가능

2. 평가방법

- 가. 연구협력처에서 「3. 평가항목별 배점기준」에 의거 1차 평가 후, 학술연구비심의위원회 위원이 최종평가 한다.
- 나. 최종평가의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다.
 - 1) 대학부속연구소 : 80점이상
 - 2) 자립운영 연구소 : 60점이상 ~ 80점미만
 - 3) 자립운영 유예연구소 : 40점이상 ~ 60점미만
- 다. 각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 기준은 [별첨2]와 같다.
- 라. 평가항목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‘0점’으로 평가된다.
- 마. 평가항목(3, 4번) “연구기관활동”, “대학발전 기여”의 세부심의사항은 학술연구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.

3. 평가항목별 배점

평가항목	평가세부항목	점수			비고
		A형	B형	C형	
1. 연구비 수주	교외 연구비 수주	50	30	10	정량평가
2. 연구성과*	학술지논문(업평2) 또는 저서(업평 3.1~3.3)	30	40	50	
	국제/국내특허(업평5.1)				
	기술이전 실적(업평 5.2)				
3. 연구기관 활동	워크숍, 세미나, 학술대회 개최 등	10	20	30	정성평가
4. 대학발전 기여	연구기관이 대학 발전기여한 기타 연구활동 실적으로 1~3. 제외사항을 정성적으로 기술 예) 교외 수상실적, 소식지 발간, 기술기고 등	10	10	10	
계		100	100	100	

※ *연구성과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 <별표 2> 연구업적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, “업평 No.” 별표 2의 평가번호임

<별첨 2> 삭제<2016.10.28>

<서식1>

부속연구기관 실적평가서

(부속연구기관)명

평가유형 : (A, B, C)형

※ A, B, C 유형 중 선택하여 ()기입

20 . . .

소장(센터장)

(인)

1. 연구비 수주

1.1 교외연구비 수주

번호	과제번호	과제명	연구 책임자	지원기관	연구기간		연구비(백만원)
					시작일	종료일	
1							
합계	총 금액						
※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처 확인 ※ 평가점수 산정 = 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 인당 교외연구비 수주액(순수위탁연구비 제외) ※ 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이 책임으로 소속 연구기관 명의로 수주한 연구비로 대학 중앙관리 연구과제에 한하며, 다년도 과제는 당해년도 연구비에 한함 ※ 배점기준							
평가 유형	인당 교외연구비수주액(단위 : 백만원) (평가점수)						
A형	50이상	50미만~40이상	40미만~30이상	30미만~20이상	20미만~15이상	15미만 (기본값)	실적 없음
	(50점)	(49점~40점)	(39점~30점)	(29점~20점)	(19~15점)	(10점)	(0점)
B형	30이상	30미만~25이상	25미만~20이상	20미만~15이상	15미만~10이상	10미만 (기본값)	실적 없음
	(30점)	(29점~25점)	(24점~20점)	(19점~15점)	(14점~10점)	(6점)	(0점)
C형	10이상	10미만~9이상	9미만~8이상	8미만~7이상	7미만~6이상	6미만 (기본값)	실적 없음
	(10점)	(9점)	(8점)	(7점)	(6점)	(2점)	(0점)
※ 기본값 구간을 제외하고 인당 교외연구비수주액이 만점기준 백만원 단위 당 1점의 편차로 배점							

2. 연구성과

2.1 학술지논문(교원업적평가 규정시행세칙 <별표 2> 평가번호 2. 실적)

번호	논문명	학술지 명	교수명	학과	게재 년월	등급	국내외	총 저자 수	점수
1									
소 계									

2.2 저서(교원업적평가 규정시행세칙 <별표 2> 평가번호 3.1~3.3 실적)

번호	저서명	출판사	저자명	학과	저자구분 (주or공동)	국내외	발간년월	총 저자 수	점수
1									
소 계									

2.3 국제/국내특허(교원업적평가 규정시행세칙 <별표 2> 평가번호 5.1. 실적)

번호	특허명/ 실용신안 명/ 소프트웨어 명	발명자	학과	특허 등록(출원)		실용신안/소프트웨어		국내외	발명자수	점수
				등록(출원) 번호	등록(출원) 년월	등록번호	등록년월			
1										
소계										

2.4 기술 이전 실적(교원업적평가 규정시행세칙 <별표 2> 평가번호 5.2. 실적)

번호	기술 명칭	책임자	대상 기관	계약일자	수입액(원)	점수
1						
소계						

총점	
----	--

※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처 확인
 ※ 본교 교원업적평가기준에 따라 산정
 ※ 평가점수 산정 = 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 논문, 저서, 특허, 기술이전 실적의 인당 점수
 ※ 배점기준

평가 유형	2.1~2.4 인당 업적평가점수(단위 : 점) (평가점수)						
	A형	36 이상 (30점)	36미만~300이상 (29점~24점)	30미만~240이상 (23점~18점)	24미만~180이상 (17점~12점)	18미만~120이상 (11점~6점)	12미만 (기본값) (4.8점)
B형	48 이상 (40점)	48미만~400이상 (39점~32점)	40미만~320이상 (31점~24점)	32미만~240이상 (23점~16점)	24미만~160이상 (15점~8점)	16미만 (기본값) (6.4점)	실적 없음 (0점)
C형	60 이상 (50점)	60미만~500이상 (49점~40점)	50미만~400이상 (39점~30점)	40미만~300이상 (29점~20점)	30미만~200이상 (19~10점)	20미만 (기본값) (8점)	실적 없음 (0점)

※ 기본값 구간을 제외하고 인당 업적평가점수(2.1~2.4)가 만점기준 1점 단위 당 1점의 편차로 배점

3. 연구기관 활동

3.1 워크숍, 세미나, 학술대회 개최실적 등

번호	명칭	참여기관	개최기간	장소	참석자수	비고
1						
합계	총 개최건수 : 건					

- ※ 연구기관에서 직접 제출
- ※ 연구기관명이 명기된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시 점수가 인정
- ※ 배점기준
 - A형 : 워크숍, 세미나 5점/건, 학술대회 개최실적 10점/건, 학술연구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는 기타 연구기관활동은 5점/건
 - B, C형 : 워크숍, 세미나 10점/건, 학술대회 개최실적 20점/건, 학술연구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는 기타 연구기관활동은 10점/건

4. 대학 발전 기여

- ※ 연구기관에서 직접 기술
- (1.~3. 평가항목을 제외한 교외 수상실적, 소식지 발간 등 연구기관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기타 연구활동실적을 요약하여 기술(10점 내)

<별첨3> 부속연구기관 운영비 지원항목

항목		내용
연구장비·재료비	연구기기·장비비	- 연구기관의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·장비, 연구시설의 설치·구입·임차·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
	시약·재료 구입비, 전산처리비	- 연구기관의 연구에 필요한 직접소모성 시약 및 재료비(시험분석료 포함), 정보 D/B 사용료, 외부 전산시스템 사용료
	시제품·시작품·시험설비 제작경비	- 연구기관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시제품, 시작품, 시험설비 제작경비
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 추진비	국내외 여비	- 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 및 연구원 국내외 출장에 대한 지원경비
	통역료 등	- 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이 발간한 논문에 대한 번역 및 교정료 등
	학회·세미나 참가비	- 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 및 연구원 국내외 학술대회·세미나 참가경비 - 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 및 연구원 학회회비 * 학회 회비 중 가입비는 제외
	인쇄·복사비 등	- 연구기관의 인쇄·복사·인화·슬라이드 제작비
	사무용품비 등	- 연구기관의 사무용품 및 각종 소모성 물품
	연구환경 유지비	- 연구기관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 * 연구기관의 단순 미관 유지·개선비는 지원 제외
	회의비	- 연구기관 회의에 소요되는 다과비 및 식대 - 연구기관 회의를 위한 회의장 사용료
연구활동 지원금	논문 게재료 - 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이 발간한 논문에 대한 게재료 및 심사료 * 산학협력단의 교원 논문 게재료 지원 및 연구과제와 중복지원 불가	
성과활용 지원비	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 -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·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* 산학협력단의 지식재산권 비용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하나 자부담 항목은 지원 가능 (개인명의 특허는 지원불가)	
기타	- 그 밖에 연구기관의 연구·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 - 개인성 경비로 판단되는 부분은 지원 불가	